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
	배포일시	2019. 3. 26.(화) / 총 3매(본문2)
담당 부서 건설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주종완, 사무관 류동훈, 주무관 박준식 • ☎ (044) 201-3514, 3515
보 도 일 시	2019년 3월 27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26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직접시공 확대, 하도급 심사 강화 ...혁신노력 차질 없이 추진 「건설산업 혁신방안」 후속조치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·시행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「건설산업 혁신방안*('18.6)」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·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.

*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, 생산구조, 시장질서, 일자리 등 4대 분야의 핵심 혁신전략 마련

(현행)	(개선)
-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 : 50억 미만	- 70억 미만으로 확대
- 하도급 적정성심사 : 예가대비 60% 이하	- 64% 이하로 확대
- 건설기술자 중복 배치 : 3개현장 (5억원 미만 공사현장)	- 3억원이상 5억원 미만 : 2개현장, 3억원 미만 : 3개현장

- 우선, 직접시공을 활성화하여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,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.
- 또한,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을 가산*하도록 하였다. 앞으로도

입찰조건을 통한 1종 시설물 직접시공 유도** 등을 병행하여 대형 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.

* 시공능력평가 시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공사실적에 가산

** 1종 시설물 등에 대해 입찰공고문, 계약조건을 통해 핵심공종 직접시공 조건 부여

□ 아울러, 이번 개정을 통해 원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* 대상을 확대(예가대비 60% → 64%)하였고,

*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 대비 82% 또는 예정가격 대비 60% 미달시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

○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 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을 축소*하였다.

* (현재) (5억 이상) 1명/1개소, (5억 미만) 1명/3개소 중복배치 허용

(개선) (5억 이상) 1명/1개소, (3억~5억) 1명/2개소, (3억미만) 1명/3개소

○ 그 밖에, 건설기술인 위상 제고를 위해 “건설기술자”를 “건설기술인”으로 변경하고, 새롭게 창업한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할 경우 혜택*를 부여하고, 부당 내부거래 시 벌점**을 부여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.

*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기술자 수 산정시 현장경력 기술자의 경우 기술자 수를 2배로 인정


**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로 처분받은 경우 신인도평가의 100분의 5 삭감

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「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(17.12)」, 「타워크레인 안전대책(18.4)」 등의 후속조치를 위해 노동법령 벌점제,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, 타워크레인 계약심사제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*(3.7~4.17) 중에 있으며,

*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의 법령정보/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

→ 의견이 있는 경우 4.17일까지 우편, 팩스,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 가능

- 향후에도 업역규제 폐지,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류동훈 사무관(☎ 044-201-351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